

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591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3. 10. 고성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3. 10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3. 2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제정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되어 '22. 9. 25.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(안 제4조)
나.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(안 제5조)
다.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라.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(안 제7조)
마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~12조)
바.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지원(안 제14조~16조)
사. 이 조례 제정으로 「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폐지
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1)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미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⇒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⇒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어 미반영함.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13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1. 20. ~ 2023. 2. 9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첨부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정목적 및 제출자

- 본 조례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(2021. 9. 24.)되고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내용 검토

- (안 제1조 ~ 제3조) 목적과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
- (안 제4조)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달성 비전을 제시하고,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
- (안 제5조 ~ 제6조)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간(5년 주기) 및 계획별 점검(매년)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5조 제1항의 계획 수립·시행 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군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가기본계획, 시·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·군·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(안 제7조 ~ 제12조)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·의결을 위한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의 설치 및 구성, 임기, 회의, 간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다양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를 위해 안 제8조 제3항의 대상 위원 중 관련 업무(7개 분야) 부서장을 국장으로 변경 또는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(안 제13조 ~ 제16조)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, 탄소중립 관련 생산·소비문화 확산 및 교육·홍보 사업 추진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부칙 안 제2조 ~ 제4조)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폐지 및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「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폐지 및 경과조치,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폐지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고성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,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, 제출된 내용 중 일부 지구 수정 및 안 제8조 관련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, 고성군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, 향후 주민·사업체 등 민간 부분 참여방안과 함께 교통, 건물, 산업, 생활 등 다양한 분야별 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3. 20. 수정가결 함.

붙 임: 1. 수정안 제안서

2. 「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」 수정안

3. 수정안 대비표

「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591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23. 3. 10.
제 출 자	고 성 군 수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과 다른 부분과 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5조제1항 “군은” 을 “군수는” 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“10명” 을 “15명” 으로 하며, 안 제8조제3항제2호 “부서장” 을 “국장 또는 부서장” 으로 수정함.

「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5조제1항 “군은” 을 “군수는” 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“10명” 을 “15명” 으로 하며, 안 제8조제3항제2호 “부서장” 을 “국장 또는 부서장” 으로 수정함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5조(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) ① <u>군은</u> 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) ---- <u>군수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교통, 환경, 산림, 에너지, 건축, 농·수·축산업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 <u>부서장</u></p> <p>3·4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----- ----- -----<u>15명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교통, 환경, 산림, 에너지, 건축, 농·수·축산업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 <u>국장 또는 부서장</u></p> <p>3·4 (현행과 같음)</p>